##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10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 김주영·강준현·김기표

김 윤 • 박해철 • 오세희

위성곤 · 정일영 · 조인철

허성무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약국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용하는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부터 2 023년까지 1,717건에 이르고 있음.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며, 불필요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법개설기관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 체계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험급여비용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불법개설 사 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 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 7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그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과 4급 이상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의료법」 제87조 및 제87조의2제2항제1호·제1호의2·제2호(같은 법 제33조제8항 및 제10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범죄
  - 2. 「약사법」 제93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 및 제95조제1항 제2호(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범죄
  - ② 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민건 강보험공단 수사심의위원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운용한다.
  - ③ 제3항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용, 구성, 소집, 심의대

상, 심의신청 절차, 심의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
	원)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
	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
	천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
	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
	한 사람 중 임원 및 분사무소
	의 장과 4급 이상의 직원은 관
	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
	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의료법」 제87조 및 제87
	조의2제2항제1호·제1호의2·
	제2호(같은 법 제33조제8항
	및 제10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범죄
	<u>2. 「약사법」 제93조제1항제1</u>
	호·제1호의2·제2호 및 제 <u>95</u>
	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
	한다)의 범죄

- ② 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심의위원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운용한다.
- ③ 제3항에 따른 수사심의위원 회의 설치·운용, 구성, 소집, 심의대상, 심의신청 절차, 심의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